

2023년 8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국회에 발의된 7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3. 8.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은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당시와 달라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선불충전 금에 대한 보호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정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시사점

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제2조 제14호 개정)

(개정 내용)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하 "개정법")은 (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요건에 업종 기준(2개 업종 이상 소위 '범용성 요건')을 폐지하고¹ (ii) 전자식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

¹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 2 개 업종 이상'인 경우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를 충족하게 되므로, '음식점 및 주점업'과 같은 1 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 포인트 등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도록 하여²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포함)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 지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이하 "제3자성 요건")은 유지하였습니다³.

(시사점) 이번 개정으로 ① 단일 업종에서만 거래되어 기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포섭되지 않던 기프트카드, 포인트 등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게 되었고, ② 지류식 상품권을 온라인/모바일 등에서의 전자화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3자성 요건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발행인, 지주회사, 모회사 등에서만 사용되는 자가형 상품권 등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선불업 관리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범용성 요건을 삭제하더라도 영세 업체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범위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i) 특정 재화 또는 용역으로만 교환할 수 있도록 발행된 교환권은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에서 제외 되는지, (ii) 전자식 포인트로 전환될 목적으로만 발행되는 지류식 상품권 등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에 포섭 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 예정인 상품권, 포인트 등이 이번 개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포섭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면제 범위 축소(제28조 제3항 개정)

(개정 내용) 기프트카드, 포인트 등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 포섭되더라도 이를 발행 및 관리하는 자는 일정조건 하에 선불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데, 개정법에서는 현행 면제 기준 중 (i)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사용되는 가맹점 기준을 축소(가맹점 수 10개 이하, 가맹점이 1개의 건축물 또는 사업장에만 위치 등→ 1개로서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하고, (ii) 발행잔액 기준을 이중으로 평가(총발행잔액 →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으로 하고 2중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시사점) 종래에는 발행액과 무관하게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었으나, 향후 총발행잔액뿐만 아니라 연간 총발행액의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

²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지류식 상품권(예: 지류형 도서문화상품권)이 포인트로 전환되면, 해당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였는데, 개정법은 이러한 포인트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³ 예를 들어, A 사가 포인트를 고객에게 발행하는 경우, 고객이 A 사와 무관하고 특수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 B 사 또는 C 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발행인인 A 사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잔액뿐만 아니라 연간 발행규모 또한 관리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불충전금 운용 방식(제25조의2 신설)

(개정 내용)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루어진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 개정법에서 법제화되어,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별도 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가 불가능 하고,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청구권의 양수인 등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이용자 자금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였습니다.

(시사점) 기존 행정지도 형식인 가이드라인보다 선불충전금 관리방식을 일부 완화하여 예치도 허용하였습니다. 한편, 본 개정사항 위반시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선불업자의 경우 선불충전금 관리 방법이 개정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및 선불업자 행위규칙(제19조 제2항 제4호 및 제36조의2 신설)

(개정 내용) 개정법은 (i) 가맹점 축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조건 변경 등의 경우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상 환급사유로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i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시사점) 이러한 환급 의무 강화 및 행위규칙 신설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머지포인트가 재무건전성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과도하게 할인발행하였다가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 고객의 예측불가상태에서 서비스를 축소하고 잔액 환급을 중단/지연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입된 것으로, 선불업자는 강화된 환급 규정 및 적립금 지급 등과 관련한 행위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 및 내규 마련 등 개정법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 관련 대표가맹점 개념 도입(제2조 제20호 나목 및 제37조 제5항 신설)

(개정 내용) 개정법은 가맹점의 정의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과 같은 개념으로서 ‘대표가맹점’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대표가맹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과 유사하게 ‘거래대행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것’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시사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가맹점의 정의상 선불업자 등이 개별 가맹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던바, 대표가맹점을 매개로 선불업을 영위하는 거래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 소액후불결제업 관련(제35조의2 신설)

(개정 내용) 한시적 규제특례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소액후불결제업을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제도화하였습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 재원으로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으며, 소액후불결제업을 겸영하려는 선불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시사점) 이번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법제화는 현재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된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금융위원회 승인 하에 영위하도록 하고, 앞서 규제특례 인정시 부과되는 부가 조건과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개인결제 한도액, 총제공한도, 금지행위 등의 구체적인 규율사항 상당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만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이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개정법 부칙)

개정법은 하위법령 준비를 위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에서는 선불업 관련 경과규정을 두어,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및 등록면제요건 개정(제2조 제14호, 제28조 제3항 제1호 개정)으로 새롭게 선불업 등록 대상이 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선불업 등록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 경우 개정법 공포 이후 선불업 등록까지 최대 1년 6개월의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

개정법 시행으로 새로이 선불업 등록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업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 미등록 선불업 영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 (ii) 금융감독원 등록 심사를 거쳐 선불업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발행 중이거나 발행 예정인 포인트 등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지, 선불업 등록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이 필요한 경우 선불업 등록 절차를 신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선불업자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환급 규정 및 적립금 지급 등과 관련한 행위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 내규 마련 등 사전 준비를 하고, 현행 선불충전금 운용 방식이 개정법에 부합한지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Authors

김준영

02-3703-1824
joonyoung.kim@kimchang.com

이정민

02-3703-1671
jungmin.lee@kimchang.com

김계정

02-3703-4550
gyejeong.kim@kimchang.com

조세경

02-3703-8413
sekyung.cho@kimchang.com

박배효

02-3703-1911
baehyo.park@kimchang.com

변남주

02-3703-8287
namjue.byoun@kimchang.com